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10 선고 2016가합1806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대한민국

변론 종결 2017. 2. 24.

판결 선고 2017. 3. 1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전 248㎡에 관하여 1999. 5. 9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경기도 고양군 C 임야 8정 8무(24,240평, 이하 '이 사건 사정토지'라 한다)는 1917. 9. 30. 경성부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았다.

나.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13년에 경기도 고양군 F과 G로 분할되었다. 위 G 임야는 1918. 10. 11. 등록전환되어 B 전 248㎡가 되었고, 이에 관하여 1963. 9. 27.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,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청구취지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가 되었다.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1979. 5. 9. H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I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. 따라서 점유개시일인 1979. 5. 9.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. 5. 9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,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. 5. 9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(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다59132 판결, 2005. 5. 26.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), 한편,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며,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다(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다10355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구 조선임야조사령(1918. 5. 1. 제령 제5호, 폐지)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임야조사서(갑 제1호증의 9)에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E 또는 그의 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할 것이고(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다49627 판결 참조), 달리 피고가 E 또는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

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추정력이 반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,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.

재판장 판사 김한성, 판사 임상은, 판사 강민정